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02. 28(월)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 나. 회부일자 : 2005. 3. 22(화)
- 다. 상정일자 : 2005. 3. 23(수)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3.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급변하는 행정수요분야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조정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2004.12.18)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43명에서 32명이 증원된 575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64명(증 32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11명

【증원사유】

- 부서신설에 따른 정원 책정(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 재난안전관리과 : 5명
 - 스포츠사업단 : 5명

- 지방행정 기능보강 : 22명

- | | | | |
|------------------------------|----|--------|----|
| · 새주소사업 | 1명 | · 혁신분권 | 1명 |
| · 백두대간보호 | 2명 | · 사회복지 | 4명 |
| · 산업경제활성화 | 6명 | | |
| · 주택가격평가(과표) 전담 | 2명 | | |
| · 책임배상보장법에 따른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처리전담 | 1명 | | |
| · 경관관리 및 T/F팀 운영 | 5명 | | |

○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 (안 제3조)

○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함. (안 제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도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평창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새로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금번 개정은 현정원 543명에서 32명이 증원된 57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증원사유는 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부서 신설과 지방행정기능보강이 사유입니다.
-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